

kiri Weekly

2016.6.7. 제387호

포커스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이슈 분석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글로벌 이슈

유럽, 투자형 보험상품 정보제공 규제 강화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의 평가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조재린 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 본고는 보험부채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 보험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는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함.
 - 지급여력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 의견서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
 - 현행 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함.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부채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해야 함.
- 이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짐.
 - 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로 이행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창구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검토 배경



-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IFRS4 2단계 시행과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경영상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 IFRS는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IFRS4 2단계로의 이행을 요구함.
 - 보험회사의 예상 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지급 능력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화가 추진될 예정임.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보험부채평가의 적정성을 보고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보험부채시가평가 시 미래 현금흐름 산출을 위한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정 산출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
 - 이에 선임계리사의 보험부채 적정성 검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이에 보고는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험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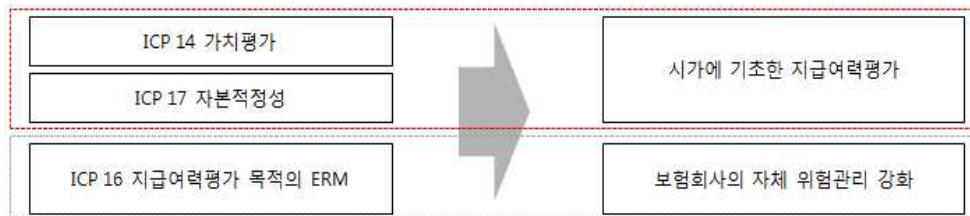


-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함.
 - 현행 국내 재무회계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함.
 - 보험부채원가평가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계약 당시의 가정¹⁾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함.

1)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

-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함.
 - 시가평가는 계약 당시의 가정이 아닌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한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²⁾는 보험부채원가평가에 기초함.
 - 반면 국제보험감독자기구³⁾는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를 권고함(〈그림 1〉 참고).
 - 국제보험감독자기구는 2014년부터 국제적 보험그룹⁴⁾에 적용하기 위한 보험자본기준⁵⁾을 개발 중임.
 - 보험자본기준은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 2017년 초안을 발표하고 2019년 최종기준을 발표할 계획임.
- 금융위기 이후 G20은 금융안정위원회⁶⁾와 국제통화기금⁷⁾을 통해 각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임.

〈그림 1〉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ICP 기준



- 보험부채시가평가로의 전환은 보험부채 변동성의 확대를 의미함.
 - 보험부채원가평가는 계약 당시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보험부채 크기가 정해짐.

2)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인 RBC 비율을 기초로 이루어짐. 이때 가용자본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재무 회계제도인 IFRS4 1단계에 기초하여 계산한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함.

3)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4) 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5)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6)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7)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시가평가는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평가 시점의 환경변화가 보험부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3.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



-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의견서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
 - (검증 업무)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따른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기초서류 검증
 - 준비금, 잉여금의 배분·처분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 준비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보증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의 적정성을 검증
 - (검증의견서 제출) 검증의견서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선임계리사의 객관적 검증과 의견제시를 위해서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에는 다음과 같이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음.
 - 선임계리사의 의견서를 받은 이사회 등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회 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현행 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함.

- 현재는 계약 시 보험부채의 크기가 확정되므로 선임계리사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

■ 향후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보험부채시가평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가정들을 설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부채가치를 평가해야 함.
 -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해약료, 무위험 수익률, 유동성 프리미엄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이때 선임계리사는 부채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해야 함.

4. 시사점



■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짐.

- 보험부채 가치의 변화는 부서별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서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보고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아울러 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로 이행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현재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 계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무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선임계리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창구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부채시가평가는 산출가정과 평가방법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선임계리사는 감독당국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켜야 할 원칙 준수 및 관리 여부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야 함.
 - 가정 결정 및 준비금 산출과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감독당국 요구 시 제출
 - 준비금 평가와 관련한 가정 관리의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가 감독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kiri**